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창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
번호 2242

1. 제안이유

- 현행 경사도 기준의 단서조항(격자별 평균경사도의 최댓값 적용)으로 인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최댓값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(별표 1 제1호 가목(3)의 (나) 단서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
 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 - 다. 기타 : 산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별표1 제1호 가목(3)의 (나)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일필지 내에 격자($10m \times 10m$)가 1개 이상일 경우(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)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개발행위허가 기준 등)</p> <p>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</p> <p>1. 분야별 검토사항</p> <p>가. 공통분야</p> <p>(나) 평균경사도 18도 (녹지지역에서는 12도) 미만인 토지. <u>다만, 일필지 내에 격자(10m× 10m)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.</u></p>	<p>제24조(개발행위허가 기준 등)</p> <p>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(나) ----- ----- . 다만, 일필지 내에 격자(10m×10m)가 1개 이상일 경우(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·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)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.</p>